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328

제출년월일: 2020년 2월 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, 타 시·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별표로 정했던 항목별 검사·시험 수수료 기준을 관련 상위법령의 수수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표를 삭제함(안 제7조 및 별표)
- 나.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되, 조례 시행 전에 검사·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·징수함(안 부칙 제1조 및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, 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.검사의뢰 규칙」,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, 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.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11. 7. ~ 11. 27..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검사·시험의뢰 수수료
 - 가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·검사 등: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제8조제 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
 - 나. 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·검사 등: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검사·시험 의뢰가 접수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서 | 제7조(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--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 다)은 연구원에 검사·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· 징수하여야 한다. 1. 검사·시험의뢰 수수료 : 별 1. 검사·시험의뢰 수수료 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가.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제5조 정하는 금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·검사 등: 「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 ·검사의뢰 규칙」 제8조제1 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수료 및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, 제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 나.「동물위생시험소법」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·검사 등: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제45조의 2에 따른 수수료 및 「식품 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

현 행	개 정 안
	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제
	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
	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
	하는 수수료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[별표] 검사·시험 수수료 [제7조	<u><</u> 삭 제>
제1항제1호 관련]	
(표 생략)	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'해당없음'
-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검사·시험 수수료 부과·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를 준용하여 규정 및 적용하므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행정6급 허안숙(02-570-3315)